

한·미 FTA, 국민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로 재검토해야



권영길
민노당 의원

지난 1월 13일, 정부는 미축과 합의 하여 지난 2003년 12월 이후 광우병 발생을 계기로 중단되었던 미국산 '도축 율령 30개월 미만의 뼈를 제외한' 쇠고기 수입 재개를 결정하였다. 수입재개 합의되면서 낙농육우산업에 종사하는 우리 농민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그 불안이 며칠 안되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지난 해 11월 마리당 499만4000원(500kg 기준)하던 한우가 지난 달 27일 460만6000원으로 약 7% 급하락했고, 사육두수도 지난 해 9월 19만2515두에서 연말엔 19만2124두로 약 300두나 감소했다. 지난 2월 3일 갑작스레 공식선언된 한·미간 FTA협상의 사전조건으로 양국간 합의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그 시작부터 육우의 가격하락과 판매량감소는 물론, 사료비도 건지기 힘들다는 농민들의 불안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시작부터 이러니, 지금 상태에서 한·미FTA가 내년 3월 체결되면 대한민국 낙농육우산업이 사지에 몰릴 수 밖에 없음은 불보듯 뻔하다.

이러한 불안한 현실과는 달리, 정부는 한·미FTA체결 시 국민소득 2%, 즉 일인당 연 30만원(4인가족 기준 연 120만원)의 국민소득이 증가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약 1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이를 계기로 십년 내에 일인당 국민총생산(GNP) 삼만불의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그려내는 한·미FTA의 장밋빛 청사진은 이미 전문학계에서 심각한 우려를 보내고 있다. 오히려 우려를 보이는 학자들 중에서는 한·미FTA가 무역과 투자를 넘어선 메가톤급 쓰나미이자 한국사회 미래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제2의 건국에 비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준비없는 협상은 농업·문화산업의 붕괴는 물론, 급격한 산업구조조정으로 사회양극화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메세지를 보내고 있을 정도이다. 대통령 책임하에서 국회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철저한 사전대책 준비

를 하지 않고 체결되는 한·미FTA는 지난 98년 IMF위기와 같이 중소기업의 도미노식 파산, 실업자 양산,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FTA를 강력히 추진하려는 정부 내에서조차 경제적 효과에 대해 뚜렷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경제부총리를 비롯, 한·미FTA 정부 담당자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장밋빛 청사진에 대해서 '감(感)'만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한·미FTA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차원에서 낙농육우산업은 물론, 농어업 전반 및 스크린쿼터축소로 인한 문화계의 피해, 보건·의료·교육·공공 서비스 분야의 충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사전대책수립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이는 심각한 우려스러움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3일 한·미 통상장관의 공동기자회견으로 미래 한국사회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한·미FTA협상이 미국 워싱턴 미의회에서 공식선언되었다. 한·미FTA에 대한 90일간의 미 의회 사전심의회가 종결되는 오는 5월 3일 양국간 FTA협상이 본격시작될 것이다. 90% 이상의 모든 상품에 대한 개방을 목표로 진행되는 한·미FTA에 대하여 아무런 국내대책 없이 만일 지금상태로 협상이 진행되고 합의된다면, 낙농

육우산업은 물론 4천만 우리 국민들의 경제적 상태는 또다시 보장할 수 없는 미래로 떠밀려 들어가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가 바뀔 수도 있는 이 엄청난 한·미 FTA를 추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책임 하에서 사전영향평가 및 대책수립, 국



회의 검증, 그리고 이해당사자로부터 의사수렴을 통한 국민적 합의도출이라는 민주적 절차준수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원칙이다. 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와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의 역할이자 몫이다. 예상 피해에 대한 대책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수립하고, FTA체결을 통해 나타나는 수익과 피해의 수준을 조절하여 국민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임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적합하게 거쳐 나온 결과가 한·미FTA추진이라면 국민들은 그 결과에 승복할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이며, 상생과 공존의 가치인 것이다. 그 반대, 즉 한·미FTA추진의 부정적 측면이 더 많을 경우 이에 대한 중단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 협상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민주주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그리고 국가가 국민들의 상생과 공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커다란 걱정과 함께, 원내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이에 대한 청문회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

한·미FTA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 국내절차 중 하나가 대국민 공청회이다. 공청회는 물론 국민적 의사수렴과 합의도출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이는 'FTA체결절차규정에 관한 대통령훈령'에 명시

되어 있는 법적 절차이다. 이러한 사전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외교통상부는 지난 2월 2일 한·미 FTA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공청회는 개최사를 시작으로 중단되었다. 관보와 자체 홈페이지의 대국민홍보를 하지 않은 채 한·미FTA협상 개시 단 하루 전에 정부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것에 대한 이해단체들의 거센 항의와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는 법적 절차 준수 및 미 측과의 협상일정을 고려하여, 공청회가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회사 선언', '자료집 배포' 등을 근거로 무산된 공청회의 개최를 인정한 후 한·미FTA협상 개시를 선포하였다. 민주주의의 원칙이 더욱 지켜져야 하는 중대한 사안을 오히려 비민주적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미측의 국내일정에 따라 끌려다니기 위해 우리 국내절차를 파행으로 만드는 정부의 모습에 국회의원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와 FTA를 추진하는 미국과 비교해보면 실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경우 협상 추진 전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책임 하에 사전영향평가 및 대책수립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서 심의한다. 앞서 언급한 협상개시선언 2월 3일과 본격협상개시 5월 3일 사이의 90일이 바로 미국 의회에서 협상에 대한 사전검토 기간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협상만료를 내년 3월 말로 합의한 것 또한 미 의회의 사후검토 90일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해진

것이다. 이러한 철저한 국내준비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민간차원의 700여 자문위원과 26개의 자문 회의가 결합하여 협상전략을 조정해 나간다.

협상에 대비한 사전준비와 합법적 절차는 중요한 책임의 과정이다. 이 과정이 민주적으로 보장될 때, 협상결과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 지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는 과정은 어떠한 민주적 과정도 국가적 책임도 함께 하고 있지 않다. 향후 한·미FTA가 장밋빛 미래가 아닌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더라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만큼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도 드물 것이다. 협상에 임할 수 밖에 없다면, 협상개시 전 국민적 합의, 국회검증, 사전대책준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전준비과정을 위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면 한·미FTA협상일정은 재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책임있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태도이다. 무책임한 정책결정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쌀협상 국회비준처리 과정, 과거 한칠레 FTA 등을 통해 익히 경험해왔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갈등비용과 경제조정비용이 천문학적 수준임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이러한 갈등을 사전에 조율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하나의 주어진 해법이 있다면, 지난 2월 2일 통상협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과정과 국가적 사전대책 수립을 제도화하기 위해 현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발의·상정된 '통상협정체결절차에 관한 법(약칭 통상절차법)'의 조속한 입법화이다. 통상절차법은 1)사회적 갈등 최소화, 2)이해집단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있는 대책수립, 3) 국내절차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4) 정부의 중장기적인 통상정책 수립 및 책임있는 집행 의무규정, 5) 국회의 바람직한 대정부 조정·감독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법안이 제정될 경우, 한·미FTA는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통상협정에 관한 민주적 절차와 국민적 합의가 보장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통상협정으로 인한 국내 수혜자와 피해자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국가정책결정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마련한 '무역조정지원법' 또한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장개방에 따른 국민적 사회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법적 제도를 통해 가장 보편적인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책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 훈령 하나만이 유일한 법적 틀인 우리의 현실에서 '무역법', '무역조정지원법' 등 제도적 보완책이 철저히 구비된 미국과의 협상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해 이미 26개국과 FTA를 추진하였으며, 올 해도 미국, 중국, 한중일, 인도,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 30~50여개국과의 '동시다발적 FTA협상'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시장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기에 그 우려가 더욱 크다. 우선적으로 위 양 법안의 입법화를 통해 한·미FTA를 포함한 시장개방에 일차적인 대응준비가 시작되어야 한다. 한·미FTA는 그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절차법'과 '무역조정지원법'의 입법화는 더욱 더 절실한 과제인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약간의 경제적 이익 이전에 민주적 존엄성이 침해받지 않고 지켜지는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국익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정신이 지켜지는 것이 바로 국민의 희망인 것이다. 또한 국익론을 앞세워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것도 국민들의 바램이 아니다. 국익은 상생과 공존 속에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를 서둘러 추진하려는 정부는 이 점을 명시하고 심사숙고의 판단을 다시 해야 한다. 국민의 대변인임을 자처하는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때이다.